

**붙임 4**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가. 일반 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구강·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바. 소화기 계통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성 신장염</li> <li>2) 중증 요실금</li> <li>3) 만성 신우염</li> <li>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li> <li>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li> <li>6) 고도의 요도협착</li> <li>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li> <li>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li> </ol>
야. 내분비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li> <li>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li> <li>3) 애디슨병</li> <li>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li> <li>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li> </ol>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혈우병</li> <li>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li> <li>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li> <li>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li> <li>5) 진성적혈구 과다증</li> <li>6) 백혈병</li> </ol>
차. 신경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li> <li>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li> <li>4) 머리뼈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li> <li>6)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li> <li>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li> <li>8)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li> </ol>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 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